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1월 13일

남가좌제2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경	이 *경 1968-01-30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12길 (남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1-03